

인천광역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58
----------	------

제출연월일 : 2010. 6.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를 동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했던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을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으로 조례 별표 2로 신설 (안 제3조)
- 나.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완(안 제4조)

□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금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관리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지정)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③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제3조(금고지정기준) ①금고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3. 시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3.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자
 4. 시 소속 3급이상 공무원
-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⑤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 ⑥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5조(지정절차) ①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등을 확정하고, 동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5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약정의 해지) ①시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 상황 등 현재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금고는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의 공개) 제4조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약정서에 명시된 출연금에 대하여는 금고 약정만료일로부터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4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 - 국내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7) - 무수익여신비율 (7) - 자기자본이익률 (6) - 대손충당금 적립률 (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2 2	
3. 시민이용의 편의성		18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나. 관내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5 5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5 5 5 4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	
	가.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5	

[별표 2]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34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4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 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전성, 7점)
 - 무수익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6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4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만기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시민이용의 편의성 (18점)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8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시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5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5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4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10점)

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나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한 실적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기준은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마련한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⑩ (생략)</p>	<p>제3조(금고지정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p> <p>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p> <p>② -----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p>관계법령</p>	<p>□ 행정자치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p> <p>3. 금고지정 평가기준</p> <p>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5)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5)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10)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5)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p>4. 금고의 지정절차</p> <p style="padding-left: 20px;">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

<p>관련 법령</p>	<p>○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p> <p>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p>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p>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p> <p>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 <p>○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p> <p>○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p>
<p>관련 법규 정비대상</p>	<p>“해당없음”</p>
<p>관련자료</p>	<p>“해당없음”</p>